

|              |                           |
|--------------|---------------------------|
| 의안번호         | 제 46 호                    |
| 의 결<br>년 월 일 | 1998년 11월 21일<br>(제 79 회) |

|         |
|---------|
| 의 결 사 항 |
| 원안가결    |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 개정,폐지조례(안)

|              |                |
|--------------|----------------|
|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
| 제 출<br>년 월 일 | 1998. 11. 24 .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46 |
|----------|----|

제출년월일 : 1998. 11. 24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 1. 제 안 사 유

-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지역여건상 요보호여성의 발생 우려가 적고 보은군여성회관내 상담도우미실에서 요보호여성을 보호하고 있어 조례 폐지
- 근거규정의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거 관련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 2. 주 요 골 자

- 제1조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2조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4조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5조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
- 제6조(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
- 제7조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 사회복지과장 ⇒ 사회경제과장
  - 경제과장 ⇒ 사회경제과장
  - 사회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 사회담당주사
  - 주무계장 ⇒ 주무담당주사
- 제3조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의 폐지
  - 요보호여성을 상담, 보호토록 부녀상담소를 설치하였으나, 보은군여성회관내에 상담 도우미실에서 요보호여성을 관리하여 현실에 부합한 조례로 폐지코자함.

- 제4조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 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제8조 (보은군농공지구조성사업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 제20조의1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 농공지구 ⇒ 농공단지
  - 제12조 ⇒ 삭제

3. 근거법령 :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6조 제3장

4. 사전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첨부 : 1.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폐지조례(안)

2. 신 · 구조문 대비표



3. 기타 참고자료

##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 개정,폐지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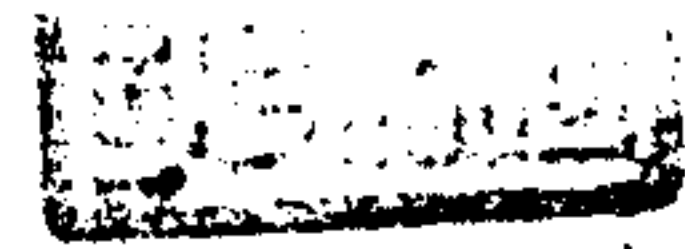
제1조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사회경제과장” 으로 하고 “사회복지계장” 을 “사회담당주사” 로 한다.

제2조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사회경제과장” 으로 하고 “사회복지계장” 을 “사회담당주사” 로 한다.

제3조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의 폐지)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조례 제1487호 '97. 1. 15)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사회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7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4.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5.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5조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군사회복지과장” 을 “군사회경제과장” 으로 하고

제5조제4항중 “가정복지계장” 을 “사회담당주사” 로 하고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사회경제과장” 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사회경제과장” 으로 하고 “가정복지계장” 을 “사회담당주사” 로 한다.

제6조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군사회복지과장” 을 “군사회경제과장” 으로 하고

제5조제4항중 “주무계장” 을 “주무담당주사” 로 하고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사회경제과장” 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사회경제과장” 으로 하고 “주무계장” 을 “주무담당주사” 로 한다.

제7조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경제과장” 을 “사회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8조 (보은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보은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보은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를 “보은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중 “농공지구” 를 “농공단지” 로 하고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 제20조의1” 을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1조제6항” 으로 한다.

제2조중 “농공지구” 를 “농공단지” 로 한다.

제4조중 선수금을 삭제한다.

제5조중 “지구시공비” 를 “단지시공비” 로 하고 “농공지구” 를 “농공단지” 로 한다.

제8조제1항내지3항중 “농공지구” 를 “농공단지” 로 한다.

제10조, 제11조중 “농공지구” 를 “농공단지” 로 하고 제10조제1항 “농공지구조성사업 용자금 상환대장을 지구별” 을 “농공단지조성사업 용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농공지구” 를 “농공단지” 로 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농공지구” 를 “농공단지” 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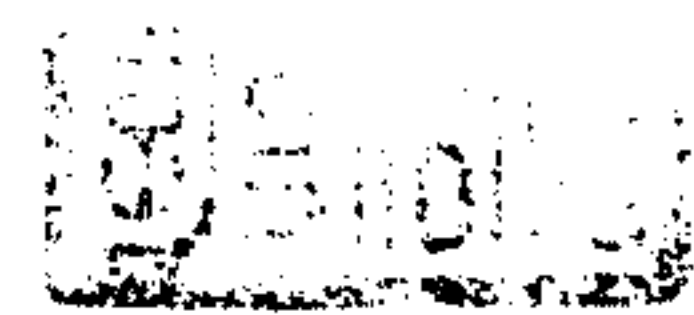
| 현                                                                                                    | 행                                                                                                        | 개                                                                                                        | 정                                                                                                        |
|------------------------------------------------------------------------------------------------------|----------------------------------------------------------------------------------------------------------|----------------------------------------------------------------------------------------------------------|----------------------------------------------------------------------------------------------------------|
| 제1조(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 제1조(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 제1조(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 제1조(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
|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의 <u>사회복지과장</u> ,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u>사회복지계장으로</u>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 - - - - -<br>- - - - -<br>- - - - - <u>사회경제과장</u> - -<br>- - - - - <u>사회담당주사로</u><br>- - |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 - - - - -<br>- - - - -<br>- - - - - <u>사회경제과장</u> - -<br>- - - - - <u>사회담당주사로</u><br>- - |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 - - - - -<br>- - - - -<br>- - - - - <u>사회경제과장</u> - -<br>- - - - - <u>사회담당주사로</u><br>-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제2조(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2조(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2조(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2조(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
| ② 간사는 <u>사회복지과장</u> 이 되며 서기는 <u>사회복지계장</u> 이 된다.                                                     | ② - - - <u>사회경제과장</u> - - - - -<br>- <u>사회담당주사가</u> - -                                                  | ② - - - <u>사회경제과장</u> - - - - -<br>- <u>사회담당주사가</u> - -                                                  | ② - - - <u>사회경제과장</u> - - - - -<br>- <u>사회담당주사가</u> -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 제4조(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4조(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4조(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제4조(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 제4조(관장) ① 회관의 관장은 <u>사회복지과장</u> 이 대행한다.                                                              | 제4조(관장) ① - - - - - <u>사회경제과장</u> - - -                                                                  | 제4조(관장) ① - - - - - <u>사회경제과장</u> - - -                                                                  | 제4조(관장) ① - - - - - <u>사회경제과장</u> -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
| 3. <u>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한다.</u>                                   | 3. <u>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7일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u>                                                | 3. <u>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7일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u>                                                | 3. <u>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7일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u>                                                |
|                                                                                                      | 4. <u>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7일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u>                              | 4. <u>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7일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u>                              | 4. <u>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7일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u>                              |
|                                                                                                      | 5. <u>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u>                                   | 5. <u>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u>                                   | 5. <u>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u>                                   |

| 현                                                                                                                                                                                                                                                                                                                                                                                                                                                                                                                                                                    | 개                                                                                                                                                                                                                                                                                                                                                                                                                                                                                                                                                                                        |
|----------------------------------------------------------------------------------------------------------------------------------------------------------------------------------------------------------------------------------------------------------------------------------------------------------------------------------------------------------------------------------------------------------------------------------------------------------------------------------------------------------------------------------------------------------------------|------------------------------------------------------------------------------------------------------------------------------------------------------------------------------------------------------------------------------------------------------------------------------------------------------------------------------------------------------------------------------------------------------------------------------------------------------------------------------------------------------------------------------------------------------------------------------------------|
| 제5조(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br>조례의 개정)<br>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br>② (생략)<br>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br>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한노인회<br>충청북도연합회 보은군지회장(이하<br>“지회장”이라 한다) 지회에서 추천<br>하는 읍면 분회장 2인, <u>군사회복지과장</u><br>과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br>있는 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br>한다.<br>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br>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u>가정복지계장</u><br>이 된다.<br>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br>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부군<br>수 기획감사실장, 노인회 보은군지회장<br>, <u>사회복지과장</u> 의 임기는 그 직위에<br>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br>② (생략)<br>제13조(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br>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br>금운용관으로 <u>사회복지과장</u> 을 기금출<br>납원을 <u>가정복지계장</u> 으로 한다.<br>② (생략) | 제5조(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br>조례의 개정)<br>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br>③ - - - - -<br>- - - - -<br>- - - - -<br>- - - - -<br>- - - - - <u>군사회경제과장</u><br>- - - - -<br>- - - - -<br>- - - - -<br>④ - - - - -<br>- - - - - <u>사회담당주사</u><br>가 된다. <br>제8조(위원의 임기) ① - - - - -<br>- - - - -<br>- - - - -<br>- - - - - <u>사회경제과장</u> - - - - -<br>- - - - -<br>② (현행과 같음)<br>제13조(회계관리) ① - - - - -<br>- - - - -<br>- - - - - <u>사회경제과장</u> 을 - - - - -<br>- - - - - <u>사회담당주사로</u> -<br>② (현행과 같음) |
| 제6조(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br>리조례의 개정)<br>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br>② (생략)                                                                                                                                                                                                                                                                                                                                                                                                                                                                                                     | 제6조(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br>리조례의 개정)<br>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현                                                                                                                                                                                                                                                                                                            | 행                                                                                                                                                                                                                                                                                                            | 개                                                                                                                                                                                                                                                                                                                                              | 정                                                                                                                                                                                                                                                                                                                                              |
|--------------------------------------------------------------------------------------------------------------------------------------------------------------------------------------------------------------------------------------------------------------------------------------------------------------|--------------------------------------------------------------------------------------------------------------------------------------------------------------------------------------------------------------------------------------------------------------------------------------------------------------|------------------------------------------------------------------------------------------------------------------------------------------------------------------------------------------------------------------------------------------------------------------------------------------------------------------------------------------------|------------------------------------------------------------------------------------------------------------------------------------------------------------------------------------------------------------------------------------------------------------------------------------------------------------------------------------------------|
| <p>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등록된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읍면 대표 2인, <u>군사회복지과장</u>, 기타 장애인 복지 분야에 학식과 덕만이 있는 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청 장애인복지 주무계장이 된다.</p> <p>제13조(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u>사회복지과장</u>을 기금출납원으로 장애인복지 주무계장으로 한다.</p> <p>② (생략)</p> | <p>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등록된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읍면 대표 2인, <u>군사회복지과장</u>, 기타 장애인 복지 분야에 학식과 덕만이 있는 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청 장애인복지 주무계장이 된다.</p> <p>제13조(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u>사회복지과장</u>을 기금출납원으로 장애인복지 주무계장으로 한다.</p> <p>② (생략)</p> | <p>③ - - - - -</p> <p>- - - - -</p> <p>- - - - -</p> <p>- - - - <u>군사회복지과장</u> - - - - -</p> <p>- - - - -</p> <p>- - - - -</p> <p>④ - - - - -</p> <p>- - - - -</p> <p><u>주무담당주사가</u> - - - - -</p> <p>제13조(회계관리) ① - - - - -</p> <p>- - - - -</p> <p>- - - <u>사회복지과장</u>을 - - - - -</p> <p>- - - - - <u>주무담당주사</u> - - - - -</p> <p>② (생략)</p> | <p>③ - - - - -</p> <p>- - - - -</p> <p>- - - - -</p> <p>- - - - <u>군사회복지과장</u> - - - - -</p> <p>- - - - -</p> <p>- - - - -</p> <p>④ - - - - -</p> <p>- - - - -</p> <p><u>주무담당주사가</u> - - - - -</p> <p>제13조(회계관리) ① - - - - -</p> <p>- - - - -</p> <p>- - - <u>사회복지과장</u>을 - - - - -</p> <p>- - - - - <u>주무담당주사</u> - - - - -</p> <p>② (생략)</p> |
| <p>제7조(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의 개정)</p> <p>제10조 ① (생략)</p> <p>② 간사는 <u>경제과장</u>이 된다</p> <p>③ (생략)</p>                                                                                                                                                                                                          | <p>제7조(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의 개정)</p> <p>제10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사회경제과장</u>이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p>제7조(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의 개정)</p> <p>제10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사회경제과장</u>이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p>제7조(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의 개정)</p> <p>제10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사회경제과장</u>이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 <p>제8조(보은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u>농공지구</u> 조성 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의1</u> 규정에 의한 보은군 <u>농공지구</u>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8조(보은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u>농공단지</u> 조성 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의1</u> 규정에 의한 보은군 <u>농공단지</u>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8조(보은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p> <p>제1조(목적) - - - - - 보은군 <u>농공단지</u> 조성 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의1</u> 규정에 의한 보은군 <u>농공단지</u>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8조(보은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p> <p>제1조(목적) - - - - - 보은군 <u>농공단지</u> 조성 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의1</u> 규정에 의한 보은군 <u>농공단지</u>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현                               | 행                               | 개                                                                                                                  | 정                                                                                                                  |
|---------------------------------|---------------------------------|--------------------------------------------------------------------------------------------------------------------|--------------------------------------------------------------------------------------------------------------------|
|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u>농공지구</u>   |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u>농공지구</u>   | 제2조(용어의정의) - - - - - <u>농공단지</u>                                                                                   | 제2조(용어의정의) - - - - - <u>농공단지</u>                                                                                   |
| 조성사업이라 함은 <u>농공지구의</u> 편입 용지    | 조성사업이라 함은 <u>농공지구의</u> 편입 용지    | - - - - - <u>농공단지</u> - - - - -                                                                                    | - - - - - <u>농공단지</u> - - - - -                                                                                    |
| 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 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 - - - - -                                                                                                          | - - - - -                                                                                                          |
|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 - - - - -                                                                                                          | - - - - -                                                                                                          |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u>선수금</u> ,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u>선수금</u> ,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
|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입대금,            |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입대금,            | - - - - -                                                                                                          | - - - - -                                                                                                          |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 - - - -                                                                                                          | - - - - -                                                                                                          |
|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 제5조(세출) - - - - -                                                                                                  | 제5조(세출) - - - - -                                                                                                  |
| 보상비, <u>지구시공비</u> , 부대시설비, 기채상환 | 보상비, <u>지구시공비</u> , 부대시설비, 기채상환 | - - -, <u>단지시공비</u> , - - - - -                                                                                    | - - -, <u>단지시공비</u> , - - - - -                                                                                    |
| 금, 기타 <u>농공지구</u>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   | 금, 기타 <u>농공지구</u>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   | - - - - <u>농공단지</u> - - - - -                                                                                      | - - - - <u>농공단지</u> - - - - -                                                                                      |
| 비로 한다.                          | 비로 한다.                          | - - - - -                                                                                                          | - - - - -                                                                                                          |
| 제8조(용자및보조) ① <u>농공지구</u> 조성사업   | 제8조(용자및보조) ① <u>농공지구</u> 조성사업   | 제8조(용자및보조) ① <u>농공단지</u> - - - - -                                                                                 | 제8조(용자및보조) ① <u>농공단지</u> - - - - -                                                                                 |
|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 - - - - -                                                                                                          | - - - - -                                                                                                          |
|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 - - - - -                                                                                                          | - - - - -                                                                                                          |
| ② (생략)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1. <u>농공지구</u> 조성사업 용자금 상환 및    | 1. <u>농공지구</u> 조성사업 용자금 상환 및    | 1. <u>농공단지</u> - -  - - - - - | 1. <u>농공단지</u> - -  - - - - - |
| 채권관리 대장                         | 채권관리 대장                         | - - - - -                                                                                                          | - - - - -                                                                                                          |
| 2. (생략)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농공지구</u> 조성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농공지구</u> 조성    | ③ - - - - - <u>농공단지</u> - - - - -                                                                                  | ③ - - - - - <u>농공단지</u> - - - - -                                                                                  |
| 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            | 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            | - - - - -                                                                                                          | - - - - -                                                                                                          |
| 자할 경우 “ <u>농공지구</u> 조성 사업자금용자   | 자할 경우 “ <u>농공지구</u> 조성 사업자금용자   | - - - - - “ <u>농공단지</u> 조성 사업자금 용자                                                                                 | - - - - - “ <u>농공단지</u> 조성 사업자금 용자                                                                                 |
| 금대여에 관한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           | 금대여에 관한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           | 금대여에 관한 협약” - - - - -                                                                                              | 금대여에 관한 협약” - - - - -                                                                                              |
| 제10조(용자조건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          | 제10조(용자조건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          | 제10조(용자조건등) ① - - - - -                                                                                            | 제10조(용자조건등) ① - - - - -                                                                                            |
| 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 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 - - - - -                                                                                                          | - - - - -                                                                                                          |
| 의한 <u>농공지구</u> 조성사업 용자금 상환      | 의한 <u>농공지구</u> 조성사업 용자금 상환      | - - <u>농공단지</u> 조성사업 용자금 상환                                                                                        | - - <u>농공단지</u> 조성사업 용자금 상환                                                                                        |
| 대장을 <u>지구별로</u> 작성 보관하여야 하      | 대장을 <u>지구별로</u> 작성 보관하여야 하      | 대장을 <u>단지별로</u> - - - - -                                                                                          | 대장을 <u>단지별로</u> - - - - -                                                                                          |
| 며 상환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 며 상환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 - - - - -                                                                                                          | - - - - -                                                                                                          |
| ② (생략)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제11조(할부금) ① <u>농공지구</u> 입주자는    | 제11조(할부금) ① <u>농공지구</u> 입주자는    | 제11조(할부금) ① <u>농공단지</u> - - - - -                                                                                  | 제11조(할부금) ① <u>농공단지</u> - - - - -                                                                                  |
| 부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 부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 - - - - -                                                                                                          | - - - - -                                                                                                          |
|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 - - - - -                                                                                                          | - - - - -                                                                                                          |
| 납부한다.                           | 납부한다.                           | - - - - -                                                                                                          | - - - - -                                                                                                          |
| ② (생략)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                                                                                 |
|-------------------------------------------------------------------------------------------------|------------------------------------------------------------------------------------|
| 제12조(관리비)                                                                                       | 삭제                                                                                 |
|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u>농공지구</u> 조성<br>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u>농공단지</u> - -<br>- - - - -                                        |
| 제14조(준용규정) (생략)                                                                                 | 제13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
|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생략                                                                          |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상환)<br>(현행과 같음)                                                    |
| 제16조(예비비) (생략)                                                                                  | 제15조(예비비) (현행과 같음)                                                                 |
| 제17조(감독) 군수는 <u>농공지구</u> 에 입주한<br>자에 대하여 <u>농공지구</u> 조성사업의 목<br>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br>감독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 - - <u>농공단지</u> - - - -<br>- - - - - <u>농공단지</u> - - - - -<br>- - - - - |
| 제18조(시행규칙) 생략                                                                                   | 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 제 7 편 사회복지

##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

제정 (1968. 4. 18 조례 제 135 호)

개정 (1979. 11. 5 조례 제 568 호)

개정 (1992. 12. 8 조례 제1364호)

개정 (1997. 1. 15 조례 제1487호)

제 1 조【목 적】 이 조례는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부녀자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보은군 부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 치】 상담소는 군 사회복지과에 둔다.

제 3 조【업 무】 상담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 상담
2. 보호를 요하는 부녀자의 계몽지도 및 직업알선
3. 가출, 부락 등으로 전락의 위험성이 있는 부녀자의 예방적 선도
4. 보호를 요하는 부녀자의 사회환경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제 4 조【소 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지방행정 사무관이나 지방별정 5급 또는 지방행정 주사나 지방별정 6급으로 보한다. 다만, 군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정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5 조【공 무 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6 조【위탁경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소를 사회사업 단체 또는 종교단체인 법인에게 위탁경영 시킬 수 있다.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8. 4. 18 조례 제 135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1. 5 조례 제 568 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 12. 8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7 편 사회복지

##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94. 10. 24 조례 제1406호)

개정 (1997. 1. 6 조례 제1481호)

제 1 조【목 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은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 치】 회관은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74번지에 둔다.

제 3 조【업 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상담 및 지도
3. 여성의 기술인력 양성 및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4. 학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운영
5. 소비자보호사업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6. 인보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7. 기타 여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 4 조【관 장】 ① 회관의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대행한다.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5 조【공무원】 회관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6 조【운영관리】 ①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회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시설물의 운영, 사용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회관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운영관리의 정지 또는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불성실하게 할 때
2. 목적에 반하는 사업으로 사용할 때
3. 회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

## 제 7 편 사회복지

정할 때

제 8 조【운영협의회 구성 운영】회관의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조【사업위탁운영】① 제6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③ 회관을 사업위탁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사용허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사용료등 징수】①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별표 2 기준에 의한 교육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초과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운영 관리비 및 제3조의 업무 이외의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12 조【사용료의 반환】기 반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한다.

제 13 조【사용료등 면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요 구호대상자

제 14 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 7 편 사회복지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4. 기타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인정되는 자

제 15 조【강사초빙】 ① 제3조에 의하여 사업수행시 전문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손해배상】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비품,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및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설비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회관을 사업위탁 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위탁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회관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8 조【공과금 부담】 위탁운영자는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9 조【대장 및 장부비치】 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0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10. 24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6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중·고등지 개발시책 통합시책

⑤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소요자금 배정요청을 농림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 12 조(공동이용건축물의 설치지원) 공동이용건축물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보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농공단지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